

#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복지정책과

제정 2025·12·26 규칙 제81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신청)** ① 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(자활사업 지원), 제9조(자활기금의 용도), 제11조(지원신청 등)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」 제9조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
2.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**제3조(기금지원 결정)** ① 지원금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
1.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
2.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
3.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
4.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,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**제4조(기금의 지급)**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·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·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,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·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계획 변경 등)**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(중단·폐지)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대여금의 상환)** 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,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.

**제7조(상환금 연체자 조치)**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8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**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**제9조(기금 정산)** 제12조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지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장부의 비치)**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자활기금 관리대장(별지 제8호서식)
2. 자활기금 지급대장(별지 제9호서식)
3. 현금 출납부(별지 제10호서식)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** 「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자활기금 대여·지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
	주소	(집전화 : (핸드폰 :))		
지원대상구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근로사업단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사업실시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대여조건	- 년거치 년 균등 분할상환 - 이자 : % (연체이자 : %)			
신청금액	금 원(₩)			
자금종류 및 용도	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			
	자활기업 사업자금			
	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			
	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			
	자활사업의 연구·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			
	기타 :			
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」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(인)				
이천시장 귀하				
구비서류	1. 사업계획서 2.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	

[별지 제2호서식]

## 사 업 계 획 서

## 1. 사업개요

기 관 명		담 당 자	성명 : 전화번호 :
신청인 성명		형 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단
업 종		참여인원	
사업목적			

## 2. 임대희망점포 현황

소재지	약 도
구조	
규모	
임대액 (지원대상금액)	
기타비용 (지원외예상 소요금액)	

## 3.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

## 가.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

구 분	매 출 수입금	지출액	적립금	비고
계				
○○○○ 년				

※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

##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#### 1)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

※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(월별, 년간)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

#### 2) 향후 사업추진계획

※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신청인

(인)

### [별지 제3호서식]

##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자활기금 대여·지원결정 통지서
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		
	주소		연락처	전화(집)		
				H·P(본인)		
구 분	신 청 내 역		결 정 내 역			
자 금 용 도						
대여(지원) 금액	금	원	금	원		
상환개시일			상환종료일			

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천 시 장

기금 사용자 주의사항	☆ 기금을 대여 받은자의 사용신고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·중단·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(중단·폐지)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</li> <li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/ol>
	☆ 대여금 상환 등 안내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,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(단, 학자금 제외)를 상환하게 됩니다.</li> <li>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택으로 발송되며,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.</li> <li>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%를 추가 징수하게 되며,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
[별지 제5호서식]

## 자활기금대여 · 지원금교부신청서

1. 신청자(사업자)				
2. 주소	(전화 : )			
3. 사업기간	년	월	~	년
4. 신청금액	원			
5. 신 청 내 역				
총사업비	소      요      경      비      재      원			
	기금보조액	자체부담액	후      원      금	기      타
원	원	원	원	원
<p>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>대표자(신청인) : (인)</p> <p>주              소 :</p> <p>기관(법인 · 단체)명 : (인)</p> <p>예금계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은행명 :</li> <li>• 계좌번호 :</li> </ul> <p>이천시장 귀하</p>				

[별지 제6호서식]

## 사업변경(중단·폐지) 신고서

[별지 제7호서식]

## 자활기금지원금정산서

1. 사업명 :

2. 지원금집행상황

(단위 : 원)

내 역	수 입 액	지 출 액	잔 액	비 고
계				
자 활 기 금				
자체부담금				
후 원 금				
기 타				

「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주 소 :	년	월
법인(단체)명 :	(인)	
대표(사업)자 :	(인)	

- 붙임 1.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 
 2. 지원금 집행내역 1부  
 3.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 
 4. 각종 증빙자료 각 1부

이 천 시 장 귀하

1. 지원사업 추진실적

사업개요	
추진실적	
효과	
문제점 및 건의	

2. 지원금 집행내역

(단위 : 원)

집행내역	집 행 액				
	계	자활기금	자체부담금	후원금	기타
계					

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8호서식]

자활기금 관리대장

년월일	예 탁 금 내 역					인 출		잔액	비고
	종 별	금 액	계좌번호	이 율	기 간	적 요	금 액		

[별지 제9호서식]

### 자활기금 지급대장

년월일	적 요	지 급 처	지 급 액	비 고

[별지 제10호서식]

### 현금출납부

년월일	적 요	수입액	지급액	잔 액	결 재		
					담당	팀장	과장